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3438    |
| 의 퇴 인 | 이수진 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4.9.30. |
| 추계번호  | 24B3462    |

#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 및 조사·연구 등을 시행하며 관련 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5,300만원, 2030년 1억 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6억 1,600만원(연평균 1억 2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7조) | 50   | —    | —    | 50   | —    | 100 | 20  |
| 실태조사(안 제9조)             | 40   | 40   | 40   | 40   | 40   | 200 | 40  |
| 조사·연구 등(안 제10조)       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250 | 50  |
| 과로사등 방지대책 협의회(안 제11조)   | 13.2 | 13.2 | 13.2 | 13.2 | 13.2 | 66  | 13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| 153  | 103  | 103  | 153  | 103  | 616 | 123 |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과로사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필요한 대책(이하 “과로사 등 방지대책”이라 한다)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, 공공기관·사업주·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2항)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  | 안 제5조(국민과 사업주의 책무)       | 국민과 사업주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로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7조(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) |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<br>1.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목표·기본방향에 관한 사항<br>2.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<br>3.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<br>4. 과로사 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<br>5. 과로사 등 실태조사 및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<br>6. 과로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<br>7. 그 밖에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함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| 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로사 등 방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5  | 안 제9조(과로사 등 실태조사)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의 발생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과로사 등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로사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·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실태조사의 시기, 내용, 범위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| 6  | 안 제10조(조사·연구 등)        | 정부는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예방·방지를 위하여 과로사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·작업환경·조직구조·조직문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 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조사·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   |
| 7  | 안 제11조(과로사 등 방지대책 협의회) |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조정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. 기획재정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<br>2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<br>3.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<br>4.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<br>5. 그 밖에 과로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|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(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, 사업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(제5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  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8  | 안 제12조(피해자단체)              |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로사 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 유족 등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(제1항)<br>1. 과로성 질환을 가진 사람(이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그 가족<br>2. 과로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가족<br>3.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·정신적 부담에 따라 악화된 사람(이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그 가족<br>4.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·정신적 부담에 따라 악화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가족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(이하 “피해자단체”라 한다)는 과로사등 발생시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9  | 안 제13조(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치·지원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·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 등을 예방·방지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·방지를 위하여 사업주 등이 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같은 법 제51조, 제51조의2, 제52조, 제53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, 선택적 근로시간제,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[근로자를 조(組)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]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0 | 안 제14조(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·방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1 | 안 제15조(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상담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을 예방·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,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및 사업주 등에게 과로사 등을 예방·방지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,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2 | 안 제16조(민간 단체 활동 지원 등)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·방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         | —    | • 미대상<br>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5조(국민과 사업주의 책무)       | —    | • 미대상<br>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7조(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) | ○    | • 유사사례 참고<br>—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12개 법정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, 과로사 등 예방과 관련한 기본계획도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<br>— 다만, 3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감안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<br>— 본문참조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  | 안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 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항: 미첨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 등이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해당 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·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</li> <li>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2023년 기준 12개 법정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계획의 수립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2항: 미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정안은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나,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9조(과로사 등 실태조사)          | ○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사사례 참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10조(조사·연구 등)            | ○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사사례 참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사·연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안 제11조(과로사 등 방지대책 협의회)     | ○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사사례 참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12조(피해자단체)              | 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2항: 미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안 제13조(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치·지원)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첨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) 코드: 4154-350의 내역사업

2) 코드: 4152-353의 내역사업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 | 안 제14조(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)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첨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2023년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방송·언론매체 등을 통해 산재예방 알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안전보건문화 선진화<sup>1)</sup> 사업에 85억 원(2024년 예산 기준)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</li> <li>– 따라서 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교육·홍보 업무는 고용노동부 기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,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의 확대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</li> <li>–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안 제15조(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상담)   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첨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제정안은 상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,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</li> <li>– 다만,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‘심층 건강진단 및 집중관리’를 위해 38억원<sup>2)</sup>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, 현행 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</li> <li>– 따라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 |
| 12 | 안 제16조(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)      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첨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민간단체 활동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7조)

-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목표·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 -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(5,000만원)을 준용하여 추계

[표 2]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과로사등 예방<br>기본계획의 수립 | 50   | —    | —    | 50   | —    | 100 |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## 나. 과로사등 실태조사(안 제9조)

-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종별 근로시간 및 과로사 등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하고,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
  -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성
  - (유사사례)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
    - － (용역예산) 4,000만원(2023년)
    - － (주요내용) 2024년 1월부터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 적용 대상에 포함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·보건관리 실태조사<sup>3)</sup>
    - － (수행기관) 한국안전학회

3)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- 8호

[표 3]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실태조사 | 40   | 40   | 40   | 40   | 40   | 200 |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## 다. 조사·연구 등(안 제10조)

-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·작업환경·조직구조·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- 과로사등 예방 관련 조사·연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(5,000만원)을 준용하여 추계

[표 4] 조사·연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조사·연구 등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250 |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## 라.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(안 제11조)

- 제정안은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- (구성)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

- － 제정안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원 수는 11명으로 가정

1. 기획재정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2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3.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 4.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 5. 그 밖에 과로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- 회의참석 사례금(안건 검토비 등 포함)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  
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<sup>4)</sup>
   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 - 회의개최 횟수는 제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5]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 구성·운영 비용추계: 2026~2030년

|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민간위원 수(A, 명)         | 11   | 11   | 11   | 11   | 11   | —  |
| 회의개최 횟수(B, 회)    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—  |
| 회의참석사례금(C, 만원/명·회)   | 30   | 30   | 30   | 30   | 30   | —  |
| 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 | 13.2 | 13.2 | 13.2 | 13.2 | 13.2 | 66 |

주: 1.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 및 조사·연구 등을 시행하며 관련 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5,300만원, 2030년 1억 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6억 1,600만원(연평균 1억 2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6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7조) | 50   | —    | —    | 50   | —    | 100 | 20  |
| 실태조사(안 제9조)             | 40   | 40   | 40   | 40   | 40   | 200 | 40  |
| 조사·연구 등(안 제10조)       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50   | 250 | 50  |
| 과로사등 방지대책 협의회(안 제11조)   | 13.2 | 13.2 | 13.2 | 13.2 | 13.2 | 66  | 13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| 153  | 103  | 103  | 153  | 103  | 616 | 123 |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4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2024. 5., p.218)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 -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남 희 | 배아형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|
| 남 희 | 02-6788-3737 | nhee@nabo.go.kr |